

2019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제 16차 회의록

- 회의일시 : 2019. 11. 22 (금요일), 13:00 ~ 14:0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 : 서연호(위원장), 최성은, 채금석, 안귀숙, 홍나영, 장남원, 정복상,
조일상, 신타근, 이정덕, 박상미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‘삼베짜기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| (비공개)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
【검토사항】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‘나전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| (비공개)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2 | ‘서울 석장’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 협의 | (공 개)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
2. ‘서울 석장’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 협의

가. 제안사항

‘서울 석장’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 협의 요청(2019.09.19.)에 따라, 해당 종목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가 ‘서울 석장’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자, 지정 명칭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협의 요청함에 따라 이를 부의하는 것임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32조(시·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·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. **다만, 시·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**

다. 주요내용

(1) 추진경과

- 석장 종목 지정조사 결정 및 지정조사('18.10월~'19.03월.)
- 종목지정 사전심의 가결('19.07.18)
 -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. 종목명칭 ‘서울석장’
 - 세부종목 : 석구조장, 석조각장

(2) 지정 배경 및 필요성(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/ '19.07.18)

- 조선왕조의 수도로서 경궁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, 한양의 석조문화재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 지정가치가 있음

(3) 참고사항 : ‘석장’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

지정명칭	지정일	보유자(생년, 성별, 인정일, 기·예능)	전수교육조교
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석 장	'00.09.17	이 의 상 ('42,남/'07.09.17-석 구조물) 이 재 순 ('56,남/'07.09.17-석조각)	-
전북무형문화재 제36호 석 장	'06.11.10	김 옥 수 ('54,남/'06.11.10-석조각) 권 오 달 ('43,남/'18.10.18-석조각)	-
경기무형문화재 제42-1호 석 장	'05.02.07	박 찬 봉 ('52,남/'05.02.07-조각)	-
경기무형문화재 제42-2호 석 장	'13.12.31	임 동 조 ('55,남/'13.12.31-석구조물)	-
충남무형문화재 제48호 보령 석 장	'13.12.02	고 석 산 ('55,남/'13.12.02-석장)	-

라. 검토의견

- 명칭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, ‘서울 석장’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마. 검토할 내용 : ‘서울 석장’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

바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지정 명칭은 ‘서울 석장’으로 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가결 11명